○안 제5조(기금의 관리·운용)에 제3항, 제4항을 신설하여
-기금계획서와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고,
-이를 서울특별시의회에 제출토록 함.
○제12조(시행규칙)를 신설하여 위임규정을 둠.

8. 소수의견의 요지 : 없 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서울특별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 번호	624

2000년 7월 일
행정자치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00년 6월 13일, 서울특별시장 제출
나. 회부일자 : 2000년 6월 16일
다. 상정일자 : 제18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2000년 6월 28일 상정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행정관리국장 : 김재종)
가. 제안이유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이 개정되어 정부가 지원하는 국가유공자의 상이등급이 2000.1.1부터 1개 등급(7급) 추가 신설됨에 따라 신설된 상이등급 7급인 국가유공자가 사용하는 자동차 1대에 대하여 취득세·등록세·자동차세를 면제하여 국가를 위하여 희생·봉사한 상이국가유공자를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2조 제3항)
나. 주요골자
국가를 위하여 희생·봉사하던 중 상이자가 된 자들로서 국가를 위하여 희생한 1급 내지 6급의 상이자들에 대하여 국가적 예우차원에서 지방세를 감면하고 있는 취지를 볼 때, 신설된 상이등급 7급 상이국가유공자들에 대하여도 지방세를 감면하는 것임.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 김종식)
○동 개정조례안의 제안사유는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이 개정되어 정부가 지원하는 국가유공자의 상이등급이 2000.1.1부터 1개 등급(7급) 추가 신설됨에 따라 신설된 상이등급 7급인 국가유공자도 기존 상이등급(1-6)과 같이 국가유공자가 사용하는 자동차 1대에 대한 취득세·등록세·자동차세를 면제코자 함임.
○이는 국가를 위하여 희생·봉사하던 중 상이자가 된 자들로서 국가를 위하여 희생한 1급 내지 6급의 상이자들에 대하여 국가적 예우차원에서 지방세를 감면하고 있는 취지를 볼 때, 신설된 상이등급 7급 상이국가유공자들에 대하여도 지방세를 감면하는 것이 형평성 차원에서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며,
○또한 국세인 특별소비세에서 상이등급에 관계없이 상이국가유공자 모두를 면제하고 있고, LPG 연료사용 범위에 있어서도 상이등급에 제한을 두지 않고 있으므로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개정으로 신설된 상이등급 7급에 대하여도 시세를 면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다만, 행정자치부에서 각 시·도를 대상으로 의견을 조회한 결과 9개 시·도에서는 면제 확대에 찬성하였고(서울 50%감면, 대전 세수보전 요청), 나머지 7개 시·도에서는 지방재정 감소 등을 이유로 반대하였음을 보고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람.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5. 토론요지 : 없 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재석위원 8명, 전원일치)
8. 소수의견의 요지 : 없 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서울특별시지방공무원교육시상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대한수정안

서울특별시지방공무원교육시상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중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3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지원금
3. 기타 수입금
안 제5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

이 신설한다.

③시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폐쇄후 3월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④시장은 제3항의 기금운용계획서와 기금결산보고서를 서울특별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시행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서울특별시지방공무원교육시상기금설치 및 운용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지방공무원교육시상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그 관리·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의 설치)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공무원의 능력발전과 사기앙양을 도모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지방공무원 교육훈련기관에서 실시하는 교육과정을 우수한 성적으로 수료한 자에게 지급하는 상금 등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기금을 설치한다.

제3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지원금
2. 기금의 운용으로 인한 수익금
3. 기타 수입금

제4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서울특별시지방공무원교육원 및 서울특별시소방학교에서 실시하는 교육과정 중 서울특별시지방공무원교육시상기금운용심의회에서 정하는 과정의 훈련성적이 우수한 자에 대한 상금 등의 용도에 사용한다.

제5조(기금의 관리·운용) ①시장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공무원교육원계정과 소방학교계정으로 구분하고, 각각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운용하여야 한다.

②기금은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고, 운용기금은 전년도 운용수익액의 90퍼센트 범위안에서 지출한다.

③시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폐쇄후 3월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④시장은 제3항의 기금운용계획서와 기금결산보고서를 서울특별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기금운용심의회) ①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지방공무원교육시상기금운용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1. 기금운용계획안 수립에 관한 사항
2. 수상대상 교육과정의 선정 및 수상자 선정에 관한 사항
3. 기금의 적립·운용과 결산에 관한 사항
4. 기타 기금과 관련하여 심의회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②심의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위원장은 서울특별시지방공무원교육원 원장(이하 "교육원장"이라 한다)이 되고 위원은 관계 공무원과 교육분야에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 자로 한다.

제7조(회의) ①심의회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정기회는 기금운용계획 및 기금결산의 심의를 위하여 매년 1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집한다.

③회의는 재적의원 3분의 2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간사 등) ①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교무담당사무관이 된다.

②간사는 위원회를 개최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1. 회의 개최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성명
3. 심의사항
4. 심의결과
5.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수당 등) 심의회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 및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조(기금관리공무원 등) 시장은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와 같이 기금관리공무원을 둔다.

1. 기금운용관 : 서울특별시지방공무원교육원 원장(공무원교육원계정), 서울특별시소방학교 교장(소방학교계정)
2. 분임기금운용관 : 서울특별시지방공무원교육원 교육기획과장(공무원교육원계정), 서울특별시소방학교 교학과장(소방학교계정)
3. 기금출납원 : 분임기금운용관이 지정하는 공무원

제11조(사무위임) 시장은 다음 각호의 사무를 교육원장에게 위임한다.

1.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기금계좌 설치에 관한 사항
2.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심의회 위원의 위촉 또는 임명에 관한 사항
3.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기금관리공무원 임명에 관한 사항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시행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운용기금에 대한 적용례) 제5조제2항의 운용기금은 기금설치연도의 경우에는 당해년도 기금운용계획에 의한다.

서울특별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세감면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 본문중 "6급"을 "7급"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 번호	619

2000. 7. .
기획경제위원회

1. 심 사 경 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00년 6월 13일, 서울특별시장 제출
나. 회부일자 : 2000년 6월 15일 회부
다. 상정일자 : 제18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제3차 기획경제위원회 (2000년 6월 28일 상정,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 : 기획예산실장 김우석)

가. 제안이유
소방서(동작) 신설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나. 주요골자
□동작소방서 신설
○위 치 : 동작구 신대방동 460-19
○관할구역 : 동작구 일원
□소방서 관할구역 조정
○관악소방서 : 관악구 일원 (당초 관악구, 동작구 일원에서 동작구 삭제)
○동작소방서 : 동작구 일원 신설

다. 참고사항
□관계법규 : 지방자치법 제104조 및 소방기관설치에관한규정 제5조
※지방자치법 제104조(직속기관)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 사무의 범위안에서 필요한 때에는 대통령령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소방기관·교육훈련기관·보건진료기관·시험연구기관 및 중소기업지도기관 등을 직속기관으로 설치할 수 있다.
※소방기관설치에관한규정 제5조(설치) 특별시·광역시 및 도는 그 관할구역안의 소방업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소방서를 설치한다.
□예산조치 : 별도 조치 필요없음.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전문위원 : 김동수)
○본 개정조례안은 동작구 신대방동 460번지 19호에 동작구 일원을 관할구역으로 하는 동작소방서가 2000년 8월 개설함에 따라 동 조례 제25조 제2항 별표1로 규정되어 있는 소방관서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표에 이 내용을 신설하고 기존 관악소방서의 관할구역중 동작구 일원을 삭제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타당하다고 사료